

### 연구업무규정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1.~2. 생략                      3."연구업무"라 함은 일반적인 연구업무는 물론 연구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기술이전 관련 업무 및 구매·자산, 검수, 재무·회계, 감사업무를 포함한다.                      4.~14 생략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1~2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3. "연구업무"라 함은 <b>연구기획, 대외협력, 연구계약(체결, 변경 및 해지를 포함), 집행, 정산, 증빙, 보안, 윤리 등 일반적인업무는 물론 연구수행으로 발생하는</b> 지식재산권, 기술이전 관련 업무 및 구매·자산, 검수, 감사업무 등을 포함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~14 현행과 같음  <b>15. 연구지원 총괄부서라함은 산학협력단장으로 부터 연구업무위임을 받은 산학협력단 연구처, 산학처및 운영지원부를 말한다.</b>  <b>16. 연구지원 단위부서라함은 연구비를 관리 및 집행하는 학과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.</b>  <b>17.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가진 총괄적인 책임자를 말한다.</b></p>	<p>- 일반적인 연구업무의 구체적 표기 및 연구지원 총괄부서, 단위부서, 연구책임자등 용어의 정의 추가</p>
<p>제4조(업무관장) 연구업무에관한 사항 중 연구기획, 대외협력, 연구계약, 정산, 연구결과의 활용, 구매·자산, 검수, 재무·회계, 감사 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"연구지원 총괄부서"인산학협력단연구처, 산학처, 및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하고,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"연구지원 단위부서"인학과 등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: 2009.3.1.)(개정: 2016.4.27.)</p>	<p>제4조(업무관장)  <b>① 연구업무중 연구기획, 대외협력, 연구계약, 정산, 연구결과의 활용, 구매·자산, 검수, 재무·회계, 감사 등의 관련 업무는 "연구지원 총괄부서"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b>  <b>② 연구업무중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지원 단위부서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b>  <b>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, 참여연구원평가 인센티브 배분 등을 관리한다.</b>  <b>④ 업무관장에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b>  <b>제4조의 1(관리기관) ① 총장은 연구비관리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등을 연구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지원 총괄부서의연구업무기능을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</b>  <b>②연구지원총괄부서의 연구업무기능을 위임받은 연구비관리기관은 대학의 연구업무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b></p>	<p>- 업무관장 및 부서의 개념 정리</p> <p>- 규정체계상 제6조의 2를 총칙으로 이동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6조(수탁연구과제)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에 대한 행정업무의 관리를 대학에 위임하고 대학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삭제: 2002.10.1)</p> <p>③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비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의 계약직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교수 및 소속 연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추천교수 및 소속 연구부서장은 해당 비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의 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,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승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연구과제 신청(제안)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지원 총괄부서를 경유하여 총장명의로 신청(제안)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~생략~ 본 대학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생략</p> <p>⑥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계약의 이행지체로 지체 상금을 변제해야 할 경우 등에 있어서 변상액이 연구비 총수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학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⑦ 생략</p> <p>⑧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하며,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산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.</p>	<p>제6조(수탁연구과제)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에 대한 행정업무의 관리를 <b>산학협력단</b>에 위임하고 <b>산학협력단</b>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삭제: 2002.10.1)</p> <p>③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<b>외부수탁과제의 공고 중에 연구책임자를 비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의 계약직연구원이 수행 할 수 있는 경우에는</b> 추천교수 및 소속 연구부서장은 해당 비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의 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,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<b>연구책임자로 승인할 수 있다.</b></p> <p>④ 연구과제 신청(제안)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지원 총괄부서를 경유하여 <b>산학협력단장</b>명의로 신청(제안)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~생략~ 본 <b>산학협력단</b>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.(개정: 2019.9.1)</p> <p>⑤ 현행과 같음</p> <p>⑥ <b>산학협력단은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b></p> <p>⑦ 현행과 동일</p> <p>⑧ <b>산학협력단은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방(또는 제3자)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계약상대방(또는 제3자)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손해의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b></p> <p>⑨ <b>산학협력단은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으로부터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경우,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연구용역비를 손해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</b></p> <p>⑩ <b>산학협력단은 위 제6항 내지 제8항의 경우 연구산학위원회의 결의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결정할 수 있다.</b></p> <p>⑪ <b>연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하며,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산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</b></p>	<p>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변화 반영과 용어 통일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6조의 2(관리기관) ① 총장은 연구비관리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등을 연구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지원 총괄부서의 연구업무기능을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지원총괄부서의 연구업무기능을 위임받은 연구비관리기관은 대학의 연구업무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삭제	- 규정체계상 제4조의 1를 총칙으로 이동